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0.

발 의 자 : 최수진 · 박충권 · 김미애  
구자근 · 김정재 · 김예지  
성일종 · 김소희 · 배준영  
강선영 · 박준태 · 서지영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80%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,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

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6조제2항, 제76조의3 신설, 제77조제1항, 제116조제1항제3호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25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”을 “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,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”으로 한다.

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3(가족돌봄휴직·휴가 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(이하 “가족돌봄휴직등”이라 한다)를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

경우 가족돌봄휴직등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는 가족돌봄휴직등 시작일 당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피보험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.

⑤ 그 밖에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 전단 중 “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을 “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으로”를 “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”로”로, “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전후휴가,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”로”를 “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전후휴가, 난임치료휴가,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”으로”로 한다.

제116조제1항제3호 중 “육아휴직 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을 “육아휴직 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,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

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(이하 “가족돌봄 휴직등”이라 한다)를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등

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 
일부개정법률

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, 사실 확인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,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“구직급여”는 “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으로, 제71조 및 제73조 중 “육아휴직”은 각각 “출산전후휴가,

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는 가족돌봄휴직등 시작일 당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피보험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.

⑤ 그 밖에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 
일부개정법률

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출산전  
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  
직등 급여”로-----

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전  
후휴가,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  
우자 유산·사산휴가”로 본다.

② (생략)

제116조(벌칙) ① 사업주와 공모  
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
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 
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 
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  
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 
의 벌금에 처한다.

1.·2. (생략)

3.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  
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 
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

4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  
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 
배우자 출산전후휴가, 난임치료  
휴가,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 
또는 가족돌봄휴직등”으로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6조(벌칙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육아휴직 급여,  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,  
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  
돌봄휴직등 급여

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